

검 토 보 고 서

2025. 3. 21.(금)

검 토 안 건	제 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복 지 도 시 위 원 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어르신동행과)
- 제안일 : 2025. 3. 10.
- 회부일 : 2025. 3. 11. (의안번호 : 25-20)

2.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진행 결과 기존 현금성 수당이 아닌 물품 지원으로 제도를 변경 요청한바, 이에 해당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

나. 지원 내용 변경(안 제1조)(안 제4조)(안 제6조)

다. 환수 내용 변경(안 제8조)

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5. 1. 31.~ 2. 20.(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기존 장수축하금 지급에 대한 내용 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진행 결과 기존 현금성 수당이 아닌 물품 지원으로 제도를 변경 요청한 바, 이에 해당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 안 제1조 내지 안 제9조 중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물품”으로
 - 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 중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 100세”를 “100세로”, 제2호 중 장수축하물품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 중 마포구를 삭제,

- 안 제4조의 제목 “지급금액”을 “지급내용”으로, 제목외 부분중 “한 차례만 100만원”을 “생애 한 차례만 50만원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검토의견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결과 장수축하금의 경우 현금성 수당지급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수용 되고 (보건복지부 회신 2025. 1. 8) 장수축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자 할 경우 50만원 이내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변경 요구가 있었으며 강남구와 관악구에서도 50만원 이내의 현물로 지급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어르신동행과	권윤영 (8860)	권동희 (885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강서현
연 락 처	02-3153-8857

참 고 자 료

1. 관계법규

「노인복지법」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회신공문

청렴 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 마포구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 마포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2024.1.31.)
2. 귀 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협의 요청하신 「마포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협의완료'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협의결과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마포구청장(어르신동행과장), 의회사무국장, 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나급) 박영준 사회보장조정과 전결 2025. 1. 8.
장 이영재
협조자
시행 사회보장조정과-111 (2025. 1. 8.) 접수 의회사무국-154 (2025. 1. 8.)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740 팩스번호 044-202-1976 / duddms4410@korea.kr / 부분공개

